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2024. 6.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45호로 2024년 5월 31일 임헌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노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 이동, 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광약자” 및 “관광환경” 등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 조례의 취지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 나.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다. 본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다른 조례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관계로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의를 환기하되 구체적·전문적 사항은 관련 조례에서 규정함을 명확히 하여 조례 간 체계 정합성을 제고함(안 제4조)
- 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마. 추진 사업의 수행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바. 정부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및 참여 촉진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2024. 6. 5.~ 6. 9.(의견 없음)

※ 부서 의견

중앙 정부 및 광역 중심의 사업 설계, 예산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의 한계, 유사 조례의 기(既)제정, 타 부서 유사사업 추진 등의 이유로 구 단위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개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에 관광 약자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보편적 관광복지를 실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관광약자” 및 “관광환경”의 용어를 정의함.
 - 안 제5조(사업의 추진)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6조(재정지원)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예산 지원사항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서울시는 관광약자에게 보편적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지원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제정. 2017.1.5.)를 제정하였으며, 2018년 “서울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약자 또한 편하게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¹⁾을 추진하고 있음.

1) 서울시에서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중임

- 배리어프리 영화상영(기존영화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해설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삽입)
- 어린이대공원 무장애통합놀이터 ‘꿈틀꿈틀’
- 보행약자를 위한 등산로 ‘지락길’

- 이러한 서울시의 기초를 참고하고, 관광 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우리 구(區)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신체·사회·환경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짐.
-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47조의4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 '서울다누림관광센터 개관'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항 픽업 서비스'

2)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1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행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